통합서비스이용약관 개정안내

1. 용어정의에 대한 내용 변경

개정이유 :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전시이용자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 및 아트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 제 5 조에 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사이트 :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 사이트의 주소 : www.weshareart.com) 3. 회원 :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 후, 실명인증 및 가상계좌 생성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물품 :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로서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7. 아트상품 : 물품이나 기타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의 허락 하에 동일 유사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8. 위탁자 :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9. 물품소유자 :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 및 아트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약관 제 5 조에 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사이트 :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 사이트의 주소 : www.weshareart.com) 3. 회원 :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 후, 실명인증 및 가상계좌 생성 절차를 거친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이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물품 : 미술품와 같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통하여 제작한 결과물로서 사이트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제공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7. 아트상품 : 물품이나 기타 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의 허락 하에 동일 유사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8. 위탁자 : 본인의 물품을 회사의 공동구매 또는 경매 등의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고자 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9. 물품소유자 :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렌탈 :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전시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전시이용자 : 전시이용자는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말하며, 물품에 대하여 각자의 비율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렌탈 : 회사가 물품소유자의 물품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렌탈이용자 : 렌탈이용자는 물품을 전시공간에 전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렌탈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2.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의 용어변경

개정이유 : 제11조 1항의 1. 전시이용자가 용어정의 내용에 따라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 11 조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정부기관, 호텔, 백화점 등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전시이용자와 미술품 전시계약의 체결 2.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 3. 물품의 처분 4.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 ②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자의 동의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물품소유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물품소유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취급하는 물품 거래의 특성상 물품소유자는 회	제 11 조 (회사에 대한 관리위탁) ①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1. 정부기관, 호텔, 백화점 등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렌탈이용자와 미술품 전시계약의 체결 2.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한 부가적 서비스의 제공 3. 물품의 처분 4. 위 각 호를 위한 부수절차 및 그에 대한 대리권 ② 물품소유자는 회사에게 소유한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물품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각투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동안 물품 매각에 대한 투표자의 동의가 50%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물품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물품소유자들은 회사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물품소유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처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금액 모집 단계에서부터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보관기간 종료 후 회사가 물품의 매각을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취급하는 물품 거래의 특성상 물품소유자는

사에게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며, 회사의 회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하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권 수에 따라 배분하며, 회원은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 수익내용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에게 이미 매각 시도를 동의 받은 물품들에 대해 각 매각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이 정해졌을 경우,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며, 회사의 회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하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⑤ 회사는 물품을 매각한 금액에서 사전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회원의 소유권 수에 따라 배분하며, 회원은 물품의 판매금액 및 수익률 등 수익내용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동구매 서비스 수수료 및 제세금의 용어 및 내용변경

개정이유 : 제14조 공동구매 서비스 수수료 및 제세금의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용어가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별 플랫폼 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 14 조 (공동구매 서비스 수수료 및 제세금)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구매 서비스 수수료 :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 회사는 물품금액에 대하여 구매수수료를 산출·수취합니다. 2. 매각 수수료 :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 시,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출·수취합니다 (조각거래소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수수료도,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4 조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료 및 제세금)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공동구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 각 물품소유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 되면, 회사는 물품금액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수취합니다. 2. 매각 플랫폼이용료 : 회사는 각 물품의 처분 시, 공동구매로 인한 구입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에 대하여 플랫폼이용료를 산출·수취합니다 (조각거래소를 통하여 물품을 취득한 물품소유자에 대한 플랫폼이용료도, 해당 물품이 처음 공동구매로 구입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서비스 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의 용어 및 내용변경

개정이유 : 제18조 경매서비스 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의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용어가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매위탁 수수료가 작품 위탁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낙찰 철회 수수료가 낙찰 철회 위약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별 플랫폼 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 18 조 (경매 서비스 수수료, 위탁수수료, 제세금) ① 회사는 경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서비스 수수료 : 경매수수료는 낙찰가에 대하여 산출·수취합니다. 2. 경매수수료 지연이자 :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경매수수료의 2%가 지연이자로 매 월 가산됩니다. 3. 경매위탁 수수료 : 위탁수수료는 낙찰가와 위탁가 차액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합니다. 4. 낙찰 철회 수수료 : 낙찰자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낙찰가에 대하여 위약벌을 부과합니다.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18 조 (경매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위탁 플랫폼이용료, 제세금) ① 회사는 경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낙찰 플랫폼이용료 : 낙찰 플랫폼이용료는 낙찰가에 대하여 산출·수취합니다. 2. 낙찰 플랫폼이용료 지연이자 :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불산입)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산입)까지 플랫폼이용료의 2%가 지연이자로 매 월 가산됩니다. 3. 작품 위탁 플랫폼이용료: 회사는 위탁자에게 낙찰가의 10%를 위탁 플랫폼이용료로 부과합니다. 4. 낙찰 철회 위약금 : 낙찰자가 낙찰을 취소하는 경우, 낙찰가에 대하여 위약벌을 부과합니다. ②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소유자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플랫폼이용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플랫폼이용료율, 항목의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구매대금 납부와 물품의 인도의 용어변경

개정이유 : 제19조 1항의 수수료가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 3항의 수수료가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 5항의 1. 낙찰철회비가 낙찰 철회 위약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 6항의 2. 낙찰철회비가 낙찰 철회 위약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 19 조 (구매대금 납부와 물품의 인도) ① 회사는 낙찰 받은 물품의 목록, 약관 및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경매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낙찰자에게 통지합니다(회사는 낙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는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 및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 비용 2.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③ 전항의 비용과 관련하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3 억이상일 경우 21 일 이내)에 회사에 위 금액을 완납합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 익일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경매수수료의 2%가 지연이자로 매 월 가산됩니다. ④ 낙찰자는 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에 구매금액 또는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낙찰자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 3 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습니다. ⑤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 또는 판매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총액을	제 19 조 (구매대금 납부와 물품의 인도) ① 회사는 낙찰 받은 물품의 목록, 약관 및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가, 낙찰 플랫폼이용료, 부가가치세 등 모든 낙찰자비용을 기재한 청구서를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낙찰자에게 통지합니다(회사는 낙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자는 구매한 물품에 관하여 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청구서에 기재된 총 대금 및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 비용 2. 청구서가 낙찰자에게 발송된 이후에 발생한 낙찰자비용 ③ 전항의 비용과 관련하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3 억이상일 경우 21 일 이내)에 회사에 위 금액을 완납합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납입기일까지 회사에 위 금액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납입기일 익일부터 연체대금 및 가산된 이자를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낙찰 플랫폼이용료의 2%가 지연이자로 매 월 가산됩니다. ④ 낙찰자는 약관과 유의사항에 따라 회사에 구매금액 또는 낙찰자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낙찰자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낙찰자가 아닌 제 3 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습니다. ⑤ 물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채무 또는 판매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각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총액을 낙찰자로부터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낙찰자로부터 완납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회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낙찰자에 대한 낙찰철회비 청구 2. 해당 물품을 다른 경매 또는 다른 회사의 경매에 회부 3. 판매위탁자에게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 4. 낙찰자가 회사에 대해 금전 채권 또는 금전 채무를 보유하거나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또는 직접 지급 5.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⑥ 낙찰자는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해당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낙찰일 불산입)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서면으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2. 회사에 낙찰철회비를 지급(회사가 위 서면 및 낙찰철회비를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됨) ⑦ 회사는 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물품을 인도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낙찰일 불산입)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합니다. 1. 낙찰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회사에 하자 없이 완납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⑧ 회사는 낙찰된 물품에 대하여 낙찰일로부터 낙찰자가 인수할때까지 물품을 무료로 보관합니다. 다만, 전항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낙찰자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⑨ 낙찰자가 회사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물품마다 위 기간이 초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료(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	수 있으며, 다음의 조치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회사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낙찰자에 대한 낙찰 철회 위약금 청구 2. 해당 물품을 다른 경매 또는 다른 회사의 경매에 회부 3. 판매위탁자에게 낙찰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낙찰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 4. 낙찰자가 회사에 대해 금전 채권 또는 금전 채무를 보유하거나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와의 상계 또는 직접 지급 5.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조치 ⑥ 낙찰자는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해당 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낙찰일 불산입)에 다음 각호의 조건 하에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서면으로 경매취소의 의사표시 2. 회사에 낙찰 철회 위약금을 지급(회사가 위 서면 및 낙찰 철회 위약금을 수령하는 즉시 경매는 취소됨) ⑦ 회사는 물품의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물품을 인도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 일 이내(낙찰일 불산입)에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자신이 매수한 물품을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합니다. 1. 낙찰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대금을 회사에 하자 없이 완납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수인의 신원확인 증명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증명이 없는 경우 ⑧ 회사는 낙찰된 물품에 대하여 낙찰일로부터 낙찰자가 인수할때까지 물품을 무료로 보관합니다. 다만, 전항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낙찰자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⑨ 낙찰자가 회사에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위 기간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매 물품마다 위 기간이 초과된 날로부터 인수될 때까지 보관료(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관을 위한 창고의 1 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을 위한 창고의 1일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까지의 운송수수료, 보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⑩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당사 지정하는 가상계좌의 예치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이루어지는 창고까지의 운송수수료, 보험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⑩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당사 지정하는 가상계좌의 예치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6. 조각거래소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용어 및 내용변경

개정이유 : 제30조 조각거래소 서비스 수수료의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용어가 플랫폼이용료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급별 플랫폼 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30조 (조각거래소 서비스 수수료) ① 회사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수수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후 7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제30조 (조각거래소 서비스 플랫폼이용료) ① 회사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플랫폼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② 제1항의 플랫폼이용료에는 물품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 서비스에 관련한 제반 비용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된 플랫폼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변경된 플랫폼이용료는 공지 후 7일이 지난 후에 거래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④ 플랫폼이용료는 회원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렌탈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용어 및 내용변경

개정이유 : 제22조 렌탈 서비스의 내용에서 전시이용자의 용어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22조 (렌탈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 물	제 22 조 (렌탈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 또는 조각거래소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이 완료된 물품에 관하여

품소유자들에게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전시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③ 전시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 수익 중 회사의 수취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	물품소유자들에게 권리를 위임 받아 별도 렌탈이용자와 물품을 유료 또는 무료로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공동구매 서비스로 구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한해서만 렌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③ 렌탈이용자와 회사가 유료로 렌탈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며, 이 경우 회사는 발생한 수익 중 회사의 플랫폼이용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

8. 물품의 전시사용료 및 비용에 대한 용어 및 내용변경

개정이유 : 제23조 전시이용자에 대한 용어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3항의 '합의된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의 내용이 '렌탈작품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23조 (물품의 전시사용료 및 비용) 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시이용자는 회사에게 전시사용료, 설치비용, 철수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운송비용은 렌탈이 진행될 경우 설치, 철수 시 부과되는 비용(총 2회)이며 회사에서 선납처리 후 전시이용자에 후 청구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 설치비용 및 설치 시 운송비용은 첫 달 렌탈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되며 철수비용 및 철수 시 운송비용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달 렌탈비용에 청구됩니다. ③ 보험료는 전시공간의 렌탈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보험가입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주체는 회사이며 주소는 전시공간 입니다. 보험료는 첫 달 렌탈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됩니다. 회사에서 렌탈하는 모든 물품은 보험가입이 의무화이며, 합의된 렌탈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③ 전시 사용료는 전시공간의 물품 전시 및 사용의 대가로서 전시사용료를 매 월 지불해야 합니다.	제 23 조 (물품의 전시사용료 및 비용) ①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렌탈이용자는 회사에게 전시사용료, 설치비용, 철수비용,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운송비용은 렌탈이 진행될 경우 설치, 철수 시 부과되는 비용(총 2 회)이며 회사에서 선납처리 후 렌탈이용자에 후 청구하여 비용을 납부합니다. 설치비용 및 설치 시 운송비용은 첫 달 렌탈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되며 철수비용 및 철수 시 운송비용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달 렌탈비용에 청구됩니다. ③ 보험료는 전시공간의 렌탈이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보험가입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 주체는 회사이며 주소는 전시공간 입니다. 보험료는 첫 달 렌탈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 함께 청구됩니다. 회사에서 렌탈하는 모든 물품은 보험가입이 의무화이며, 렌탈작품 총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④ 전시 사용료는 전시공간의 물품 전시 및 사용의 대가로서 전시사용료를 매 월 지불해야 합니다. ⑤ 전시 사용료가 한 달 이상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철수하며, 계약은

④ 전시 사용료가 한 달 이상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철수하며,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또한 연체 가산수수료(전시사용료의 3%)가 매 월 발생합니다.	자동적으로 해지가 됩니다. 또한 연체 가산수수료(전시사용료의 3%)가 매 월 발생합니다.

9. 전시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용어변경

개정이유 : 제24조 전시용자에 대한 용어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24조 (전시이용자의 의무) ① 전시이용자는 렌탈한 물품을 전시이용자 또는 위임을 받은 물품인수인이 서명한 물품 인수증 내의 컨디션 레포트에 체크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 및 인도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수된 물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인수증 서명 전(물품 설치 렌탈 당일) 물품의 하자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 전시공간은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품인수증 서명 전 발생한 하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물품의 전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물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사와 전시이용자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전시이용자 명의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이용자는 보험사와 계약 후 해당 보험증서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전시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시를 정하여 회사가 전시목적물을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전시공간에서 외부인으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시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24 조 (렌탈이용자의 의무) ① 렌탈이용자는 렌탈한 물품을 렌탈이용자 또는 위임을 받은 물품인수인이 서명한 물품 인수증 내의 컨디션 레포트에 체크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 및 인도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수된 물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③ 물품인수증 서명 전(물품 설치 렌탈 당일) 물품의 하자 또는 훼손을 발견한 경우, 전시공간은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품인수증 서명 전 발생한 하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물품의 전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물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사와 렌탈이용자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렌탈이용자 명의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렌탈이용자는 보험사와 계약 후 해당 보험증서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렌탈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시를 정하여 회사가 전시목적물을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전시공간에서 외부인으로 인해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 그 책임은 렌탈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0. 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에 대한 용어변경

개정이유 : 제25조 전시용자에 대한 용어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25조 (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 ① 회사는 물품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물품 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물품이 전시되는 공간에서 물품의 훼손 및 도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시이용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등 물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품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물품을 회사 내 갤러리 및 수장고에 보유, 전시 중일 때에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관리합니다.	제 25 조 (회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 ① 회사는 물품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물품 관리에 책임을 다하며, 물품이 전시되는 공간에서 물품의 훼손 및 도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렌탈이용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등 물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품소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② 물품을 회사 내 갤러리 및 수장고에 보유, 전시 중일 때에는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물품을 관리합니다.

11. 회원 렌탈 수익금 안내

개정이유 : 제26조 전시이용자에 대한 용어가 렌탈이용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20.05.26)
제26조 (회원 렌탈 수익금 안내) ① 회사는 물품소유자들의 물품을 렌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② 회사는 전시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전시사용료 중 회사의 서비스관리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시사용료, 서비스 관리비 및 제세금에 관한 사항,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26 조 (회원 렌탈 수익금 안내) ① 회사는 물품소유자들의 물품을 렌탈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② 회사는 렌탈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전시사용료 중 회사의 서비스관리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예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용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시사용료, 서비스관리비 및 제세금에 관한 사항,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을 통하여 공지합니다.